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가합522373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1. A

2. B

3. C

4. D

변론 종결 2015. 9. 24.(피고 D에 대하여) 2015. 10. 22.(피고 A, B, C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5. 11. 12.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E 사이에 2014. 6.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E[주소 : 서울 양천구 F, 401호]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25.접수 제291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E 사이에 2014.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E[주소 : 서울 양천구 F, 401호]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10.접수 제315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E 사이에 2014. 12.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E[주소 : 서울 양천구 F, 401호]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7. 접수 제612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와 G 사이에 2014. 11.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G[주소 : 서울 양천구 F, 401호]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4. 12. 12. 접수 제825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6. 14.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650,632,500원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520,506,000원, 보증기간 2013. 6. 14.부터 2014. 6. 1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E 및 그 배우자인 G은 G의 형제들인 I, J와 함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3. 6.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650,632,500원을 변제기 2014. 6. 1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3) 이후 소외 회사는 2014. 6. 13.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못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소외 회사, E, G 등의 신청에 따라 기존의 신용보증약정상 보증금액을 520,506,000원에서 499,2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4.6. 13.에서 2014. 12. 12.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를 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등

1) 소외 회사는 2014. 12. 12. 재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못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 23. 중소기업은행에 원금 499,200,000원, 이자 9,618,831원 합계 508,818,8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5. 3. 24. 2,700,286원, 2015. 4. 10. 129,000,000원을 각 회수하였다.

3)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 E, G 등 사이에 '소외 회사, E, G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및 위약금 381,482,0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E, G의 각 재산 처분행위 등

1) E은 2014. 6. 17.경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8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6. 25. 접수 제291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E은 2014. 7. 8.경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17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10. 접수 제315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E은 2014. 12. 9.경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7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 17. 접수 제612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G은 2014. 11. 17.경 피고 D와 사이에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2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4. 12. 12. 접수 제825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2001. 2. 9. 선고 2000다63516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E이 별지 1 내지 ③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는 아직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전으로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E에 대한 구상보증채권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 및 구상보증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원고와 소외 회사 및 E 사이 에 존재하였고, 2012년 여름경부터 소외 회사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 있어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구상금채권 및 구상보증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E의 별지 1 내지 ③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처분 당시로부터 6개월 내지 3일 후인 2014.12. 12. 소외 회사의 원리금 연체로 인하여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 및 사전구상보증채권이 각 성립하였고, 2015. 3. 23. 원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 및 구상보증채권이 각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E에 대한 381,482,068원의 구상보증채권은 E의 별지 1 내지 ③ 각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12. 24. G 소유의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건물 301호, 각 E소유의 서울 양천구 M, 301호 및 401호, I 소유의 인천 연수구 N아파트 103동 1305호를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599,04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5, 제9, 13,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L건물 301호와 위 N아파트 103동 1305호에 설정된 원고의 공동근저당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G과 피고들 사이의 사해행위가 이미 성립한 후에 설정된 것으로서, 위 L건물 301호의 경우에는 2014. 12. 15. O 명의의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위 N아파트 103동 1305호의 경우에는 2003. 6. 2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후 원고는 2015. 4. 14. 위 N아파트 103동 1305호에 설정되어 있던 공동근저당권을 포기하고 2015. 4. 15. 위 공동근저당권의 일부를 말소하였으며, 2015. 6. 15. 위 L건물 301호에 설정되어 있던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한편 서울 양천구 M, 301호 및 401호에 관하여는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은행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411,000,000원을 초과하는 피담보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동근저당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의 담보가치 부족으로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설령 일부 담보가치가 존재하더라도 위 공동근저당권으로써 확보된 우선변제권의 범위가 원고의 E에 대한 구상보증채권액에 미치지못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구상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지장이 없다.

2) E의 무자력

갑 제8 내지 10, 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천구,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중소기업은행,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각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2014. 6. 17. 피고 A에게, 2014. 7. 8. 피고 B에게, 2014. 12. 9. 피고 C에게 각각 별지 1 내지 ③ 각 목록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에

E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각 처분 당시 E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순번	적극재산	평가액(원)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거래가액 180,000,000
2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거래가액 170,000,000
3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거래가액 170,000,000
4	서울 양천구 목록 M, 301호	거래가액 180,000,000
5	서울 양천구 목록 M, 401호	공시가격 231,000,000
합 계		931,000,000

순번	적극재산	평가액(원)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거래가액 180,000,000
2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거래가액 170,000,000
3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거래가액 170,000,000
4	서울 양천구 목록 M, 301호	거래가액 180,000,000
5	서울 양천구 목록 M, 401호	공시가격 231,000,000
합 계		931,000,000

순번	소극재산	채무액(원)
1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채무	499,200,000
2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1,500,800,000
3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447,000,000
4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채무	78,750,000
합 계		2,525,750,000

순번	소극재산	채무액(원)
1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채무	499,200,000
2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1,500,800,000
3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447,000,000
4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채무	78,750,000
합 계		2,525,750,000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대물변제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참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피고 A, B, C는 E이 발주한 서울 양천구 M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건물 공사에 관하여 시공사인 P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들인데, P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건축주인 E에게 공사대금 직불을 독촉하였고, E은 자금사정악화로 공사대금을 현금 대신 대물변제로 실제 매매대금을 받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별지 1 내지 ③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E의 각 대물변제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 경위, 당시소외 회사 및 E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해행위에 관하여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4)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 B, C는 E로부터 각각 별지 1 내지 ③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들은 E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 대신 별지 1 내지 ③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E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A의 경우 E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이미 중소기업은행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선의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고들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가) 따라서 별지 1 내지 ③ 각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과 피고 A, B, C 사이에 각각 체결된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E에게,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25. 접수 제291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10. 접수 제315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7. 접수 제612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A, B은 각각 별지 1, ②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각 임대차보증금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가액반환할 의무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A, B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등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이 소멸한 바 없는 이상, 피고 A, B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사해행위 당시에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하였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G이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는 아직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전으로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G에 대한 구상보증채권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 및 구상보증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원고와 소외 회사 및 G 사이에 존재하였고, 2012년 여름경부터 소외 회사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 있어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구상금채권 및 구상보증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G의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 당시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4. 12. 12. 소외 회사의 원리금 연체로 인하여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 및 사전구상보증채권이 각 성립하였고, 2015. 3. 23. 원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 및 구상보증채권이 각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G에 대한 381,482,068원의 구상보증채권은 G의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G이 소외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약정상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인데 이후 G이 감사직에서 퇴임한 이상 위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이 소외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던 중 2014. 3. 31. 퇴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이 소외 회사의 감사직에서 퇴임한 후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해지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당연히 보증채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17533 판결 참조),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은 2014. 3. 31. 소외 회사의 감사직에서 퇴임한 후 소외 회사가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을 함에 있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G은 소외 회사의 감사직에서 퇴임한 것과 무관하게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구상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관한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G의 무자력

갑 제8, 18, 20, 21호증, 을자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천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소기업은행,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이 2014. 11. 17. 피고 D에게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G의 적극재산및 소극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처분 당시 G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순번	적극재산	평가액(원)
1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	거래가액 120,000,000
2	위 L건물 301호	시가 150,000,000
합 계		270,000,000

순번	소극재산	채무액(원)
1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채무	499,200,000
2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채무	78,750,000
3	Q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100,000,000
합 계		677,950,000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갑 제8호증의 4, 을자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2014. 11. 17. G이 아닌 E 명의 은행계좌로 14,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G은 피고 D와 사이에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7.자로 매매대금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G은 기존 임차인 Q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사실, 피고 D는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후인 2014. 12. 12.에야 별지 4 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4. 12. 12.은 바로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당일인 사실,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세는 2015. 5. 29. 기준으로 최고 134,000,000원 최저 125,000,000원인 사실, 피고 D는 2015. 6.

30.자 소송고지 신청서에서 위 매매계약 체결로 20,0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 D는 G에게 계약금으로 현금 6,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가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 E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고, 이를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G은 피고 D에게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의 대부분인 14,000,000원을 자신이 아닌 E로 하여금 지급받도록 하였는바, 이는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임과 동시에 G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 경위, 당시 소외 회사 및 G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해행위에 관하여 G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4)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G의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 D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가 위 부동산을 E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은 E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회사를 위하여 2001.4. 28. 및 2014. 12. 24. 그 소유의 위 N아파트 103동 1305호를 물상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 D는 2003. 2. 25. I로부터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 D는 2014. 11. 17.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6,000,000원 및 나머지 매매대금 14,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그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후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당일인 2014. 12.12.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는 것인바,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상 이례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다.

5) 소결론

따라서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G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G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4. 12. 12. 접수 제825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영준, 판사 반효림, 판사 남관모